

1. 개정 이유

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정부 인증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「화장품법」이 개정(법률 제20767호, 2025. 1. 31. 공포)됨에 따라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절차,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천연화장품·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절차,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(안 제23조의2, 제23조의3, 별표 5의2부터 별표 5의4까지 삭제)
- 나. 화장품 표시·광고 시 준수사항 기준 중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관련 내용 삭제 등(안 별표 5 나목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- 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: (우편번호 28159)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
- 전자우편: sunmilee@korea.kr
- 팩스: 043-719-3400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(전화 (043) 719 - 3409, 팩스 (043) 719 - 340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.

별표 5 제2호나목 중 “기능성화장품,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”
를 “기능성화장품이”로, “기능성화장품,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
으로”를 “기능성화장품으로”로 한다.

별표 5의2부터 별표 5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)

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받
은 사항에서 변경된 사항을 보고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천연화장품
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천연화장품 및
유기농화장품의 경우 해당 인증서의 인증 유효기간까지 인증이 유효
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3조의2(천연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인증 등)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화장품제조업자,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연구기관 등은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(이하 “인증기관”이라 한다)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.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. ③ 제1항에 따라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을 받은 자(이하 “인증사업자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인	제23조의2 <삭 제>

증을 한 인증기관에 보고를 해야 한다.

1. 인증제품 명칭의 변경

2. 인증제품을 판매하는 책임판매업자의 변경

④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그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그 인증을 한 인증기관이 폐업, 업무정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인증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.

⑤ 법 제14조의4제1항에서 “총리령으로 정하는 인증표시”란 별표 5의2의 표시를 말한다.

⑥ 인증기관의 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신청 및 변경보

고, 유효기간 연장신청 등 인증
의 세부 절차와 방법 등은 식품
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
한다.

제23조의3(천연화장품 및 유기농
화장품의 인증기관의 지정 등)

①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
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5
의3과 같다.

②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
품의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
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
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
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
다.

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
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여
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
신청인에게 인증기관 지정서를
발급해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
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
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
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식품의
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
는 서류를 갖추어 변경신청을

제23조의3 <삭 제>

해야 한다.

1. 인증기관의 대표자

2. 인증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

3. 인증업무의 범위

⑤ 인증기관은 업무를 적절하게
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
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
1. 인증신청, 인증심사 및 인증
사업자에 관한 자료를 법 제1
4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의
유효기간이 끝난 후 2년 동안
보관할 것

2.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요청
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의
사무소 및 시설에 대한 접근
을 허용하거나 필요한 정보
및 자료를 제공할 것

⑥ 법 제14조의5제3항에 따른
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
준은 별표 5의4와 같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
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의 지
정 절차 및 준수사항 등 인증기
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
방법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
이 정하여 고시한다.